

## <사업비 산정 기준>

가. (사용원칙) 창업사업비는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활동에 한하여 사용

- 1) 창업사업비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
- 2) 현금인출 사용금지,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

나. (사용분야) 상품화 제작비, 정보 활동비, 시장개척 및 홍보비, 일반운영비, 사업장 임차 등 사업화 과정(시제품 개발)에 소요되는 필요경비

### 1) 상품화 제작비

- ① 재료구입비 : 시제품(샘플)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
(판매목적의 재료구입 불가)
- ② 외주용역비 : 창업자(팀)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 
(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)
- ③ 장비임차료, 시험 분석료

### 2) 정보 활동비

- ① 도서 및 자료 구입비
- ② 관련 전시·박람회 참관, 교육 등 참가 및 등록비
- ③ 교육비(청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이외의 외부교육 참여시 발생하는 비용)

### 3) 시장개척 및 홍보비

- ① 홍보비 :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, CI 및 BI 제작 등
- ② 전시회 참가비 :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
- ③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
- ④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
- ⑤ 각종 인증획득비 :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인증비

4) 기계장치비(공구, 기구, 비품, SW 등) (총 지원금의 20% 이내)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

5) 수용비(총 지원금의 10% 이내)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인화, 소모품, 사무용품 등

- 6) 임차료 (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사용) 사업자등록 주소지 내 사업장 월 임차료 최대 80%(창업공간 임차료)
  - \* 정부·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·운영 중인 공간(BI 등)의 임차료 집행은 불가
- 7) 인건비 (2차년도 지원자 한해 집행가능)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사용 가능(월 최대 200만원, 기업부담 10%포함)
  - \* 대표자 및 대표팀원의 경우 사업비(현금)로 지급 불가
  - \*\*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인건비 계상 및 지급 불가
- 8) 인테리어비 (총 지원금의 30% 이내)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
- 9) 창업활동비 (월 50만원 한도) 참여자의 영천지역 정주(주택임차료, 식비 등) 및 사업화 활동(사전조사, 교통비, 회의비 등)에 필요한 경비
  - \* 증빙필수

다. (연차지원 대상자의 사업비 집행) 2차년도 기간 중 사업비 입금 전 사업과 관련된 지출 건의 경우 집행 인정(단, 반드시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지출금액 자부담 입금 및 결제 후 사업비 입금 시 지원금 해당금액만 본인 계좌로 이체 가능함)

라. (환수조치) 정산결과 부정사용이 있을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

**<부정사용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기준>**

참여제한 및 지원금(활동비) 회수사유		제재 및 환수범위	
		제한기간	지원금 환수액
1	사용내역 허위보고 및 사용용도 이외 사용	2년	지원금 총액
2	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교부받은 경우	3년	지원금 총액
3	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	3년	지원금 총액
4	보고서 미제출 등 시정조치 불이행 시	2년	지원중단, 퇴출

\* 지원금 환수기준

- 1. 사용내역허위보고, 사용용도 이외사용 :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
- 2.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: 지원금 총액 환수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 :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
- \*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, 중병, 교통사고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
- 4. 시정조치 불이행 : 지원중단, 퇴출

\*사업 지원기간 종료하고 창업(사업자등록) 후 보증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 시 : 환수